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2. . (제 회)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12. 00.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0000호, 2020. 12. 0.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생활안전·교통·경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나. 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함(안 제6조)
-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이상 개최함(안 제14조)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함(안 제19조)

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의결로써 정함(안 제2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입법예고 (2020. 12. 11. ~ 12. 18. 7일간) 예정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0조·제21조·제26조·제27조와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치경찰사무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범위와 이 영 별표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의 사항 및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빈도 등 치안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효율적일 것

제3조(수사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행한 다음 각 목의 범죄(다만,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만 19세 이상인 자와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학교폭력” 중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9조, 제2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감금죄(제2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

324조의 미수에 한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부터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의 미수에 한한다)까지, 제42장 손괴의 죄(제36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죄

나.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제229조(제225조의 범죄에 한한다), 제230조,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5조,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중 제266조,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제319조, 제320조의 미수에 한한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부터 제332조(동종범죄를 3범 이상 범한 사건은 제외한다),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2조의 미수에 한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51조(제347조의 상습에 한한다), 제352조(제347조의 미수에 한한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60조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는 제외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다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8조의2, 제151조, 제151조의2제2호, 제152조제1호, 제153조제2항제2호,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 규정된 범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에 규정된 범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13에 규정된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에 관한 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가출인·실종아동등 수색
(다만, 본조 이외의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1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의 추천 요청) 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
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시·도의회, 국가경찰위
원회, 해당 시·도 교육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
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임명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

속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3.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현직 경찰관은 제외한다)
4. 해당 시·도경찰청(경기도는 경기남부경찰청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시·도 본청 소속 기획조정실장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시·도의 의회 및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추천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추천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추천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추천위원은 추천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천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천위원회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추천)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는 추천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추천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추천심사대상자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가 위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시·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제1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소집 사유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실무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임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운영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4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제19조(사무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5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임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임) 법 제28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 함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실시간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미리 지휘·감독권의 위임 범위·절차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특례) ① 경찰청장과 시·도지사는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을 위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준비행위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

② 시범운영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범운영의 준비가 완료된 시·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④ 시범운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본문, 별표4제2호가목 및 별표5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3 제3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고,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 하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8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을 "「경찰공무원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④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찰위원회 규정」 제명을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 및 별표제목 중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을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국가경찰"을 "경찰"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경찰청 기획담당관"을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9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29조"을 "「경찰공무원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을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제7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1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5조"로 한다.

⑩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경찰공무원법 제3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6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경찰공무원법 제34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⑫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⑮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10조의3,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43조제2항 단서, 제44조 단서,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제60조제4항, 제61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제4항제6호, 제66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0조의2제1항, 제70조의2제2항, 제70조의2제3항,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4항, 제8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전단, 제88조제8항,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제1호다목, 제98조제3항, 제99조제3항 및 별표1제1호다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 제목, 제30조제1항 및 제87조의3제1항 제2호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등"으로 한다.

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⑪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경찰법」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⑱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제8조제2호다목 중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경찰청과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 경찰서"로 한다.

⑲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의2제2항제3호 중 "시·도의 지방경찰청 차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시·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으로 한다.

제169조의4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⑳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㉒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㉓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㉖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㉗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제3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가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제12조 본문 및 제35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을 "「경찰공무원법」 제18조"으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㉒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㉓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③④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③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③⑦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제13조 단서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⑧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㉟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전단, 제8조제5항 전단, 제8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㊲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본문,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2항 후단, 제8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㊳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법」 제26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제7호"을 "법 제33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5호, 제3조제5항, 제8조제1항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2항 전단,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호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국가경찰"을 "경찰"로 한다.

④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시·도 지방경찰청"을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로 한다.

④⑦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경찰용선박"을 "경찰용선박"으로 한다.

④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자치경찰 공무원'을 '경찰공무

원·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제정 0000. 00. 00.>

생활안전 · 교통 · 경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제2조 관련)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 · 운영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 · 관리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 · 운영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 · 관리
	3) 안전사고 및 재해 · 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 · 청소년 · 노인 · 여성 ·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 · 학교 · 성폭력 등 예방	가) 아동 · 노인 ·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 노인 ·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나) 아동 · 청소년 · 노인 · 여성 ·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 · 대응 활동 다)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 보호 활동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동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 신고 포함) 처리 나)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지하철, 내수면 등) 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발생·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처리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 신고 포함) 처리 나) 운전면허 민원 관련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다.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 전 관리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 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	--	---

비고: 위 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법제팀	
연 락 처	(02) 3150 - 0174